

#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7,109,084	10,113,273
일반회계	299,641,440	8,989,243
특별회계	37,467,644	1,124,029
기타특별회계	37,467,644	1,124,029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74,073	11,222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80,000	8,400
주차장특별회계	446,416	13,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874,900	26,247
수질개선특별회계	12,434,067	373,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47,487	598,4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10,701	93,321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96,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상호 이용 할 수 있다.